

유럽 규제 대응

BAE, KIM & LEE LLC



유럽 규제 대응

미국과 중국 간의 점증하는 긴장관계, 우크라이나, 가자, 대만해협 등 세계 각지의 분쟁, 인류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후변화와 인공지능 발달 등은 글로벌한 성장과 도약을 모색하는 우리 기업과 경제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 정부에게 막대한 도전 과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유럽 역시 변화하는 국제 정세와 글로벌 이슈에 대응하고, 세계적 규제 기준을 선점하며, 불안정한 지정학적 역학관계에서 안정적으로 산업 발전을 추구하기 위한 반도체나 배터리 또는 핵심원자재 산업에 대한 지원,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에 대응하기 위한 역외보조금이나 탄소국경조정제도 규제,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디지털시장법, 인공지능을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인공지능법 등 다양한 규제와 정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럽의 강한 규제는 전세계적으로 동일한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하고자 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갖추어야 하는 사실상의 표준(소위 '브뤼셀 효과')이 되기도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은 각 분야별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이 유럽에 수출, 투자 및 관련 사업을 하는 우리 기업과 정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갖추고, 공정거래, ESG, 인공지능, 통상 및 규제 등 모든 관련 분야에서 국내 어느 로펌보다 우수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BKL은 유럽 규제에 관한 소식을 적시에 전하고 한 발 빨리 분석하는 등 우리 기업의 유럽 규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I really enjoyed working with the team. They had a good grip on what the regulators wanted and how we should shape our position."

- Chambers and Partners Asia-Pacific

"I am very satisfied with their work. The firm's strength is definitely their ties with the regulators."

- Chambers and Partners Asia-Pacific

"The team has a good reputation and relationship with the industry experts and the government officials, which makes a big difference."

- The Legal 500 Asia Pacific

"Bae, Kim & Lee has a variety of experts and manpower in each field, and their understanding of related laws is very high."

- Chambers and Partners Asia-Pacific



RECENT HIGHLIGHTS (2024. 3. 20.자 기준)

공정거래와 소비자보호

EU 역외보조금

- 2021. 5. EU 집행위 제안, 2023. 1. 법안 발효, 2023. 7.(직권조사) 및 2023. 10.(사전신고) 시행
- EU 역내시장 경쟁 왜곡 방지를 위해 제3국으로부터 보조금 받은 기업이 EU 내에서 기업을 인수합병하거나 공공조달 입찰에 참여하는 행위 규제 (우리 기업이 한국 아닌 제3국으로부터 받은 보조금 포함)
-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기업결합 및 공공조달 사전신고 → 경쟁 왜곡 등 인정되면 시정조치 부과
- 신고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보조금으로 인해 경쟁 왜곡이 의심되면 직권조사 → 시정조치 부과
- EU 집행위원회, 2024. 2. 16. 중국 기업 중처쓰팡에 대한 직권 조사 개시 (역외보조금 규정 첫 적용 사례)

EU 디지털시장법 (Digital Markets Act)

- 2020. 12. 집행위 제안, 2022. 11. 발효, 2023. 5. 시행, 2024. 3. 모든 규정 적용
- 일정 요건 충족한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키퍼(Gate Keeper)로 지정, 개인정보 보호 포함 다양한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의무 위반의 경우 전세계 매출액의 최대 10% 벌금 등 부과 가능

EU 디지털서비스법 (Digital Service Act)

- 2020. 12. 집행위 제안, 2022. 10. 최종 채택, 2023. 8. 시행 (대규모 플랫폼), 2024. 2. 모든 플랫폼에 적용
- 온라인 중개서비스 제공자,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 온라인 플랫폼,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등에게 불법적 혐오 표현, 성적 콘텐츠 방지 등 다양한 행위 의무 부과, 의무 위반 시 전세계 매출액의 최대 6% 벌금 등 부과 가능

영국 디지털시장법 (Digital Markets, Competition and Consumers Bill)

- 2022. 5. 입법안 소개, 현재 영국 하원에서 검토 중, 법안 통과시 2024년 하반기 시행 예상
- 디지털시장 독과점 해소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독과점법과 소비자법을 하나의 법안에 포함
- 허위 리뷰, 구독 함정 등 규제하여 소비자 보호
- 시장지배력 있는 기업을 지정하고 일정한 행동기준 부과, 위반시 전세계 매출액 최대 10% 과징금 부과 가능

환경, 기후 위기 및 ESG

EU 탄소국경조정제도 (EU CBAM)

- 2021. 7. 집행위 제안, 2023. 5. 발효, 2023. 10. 전환기간 개시, 2026. 1. 전체 시행
- 전환기간(2023. 10. ~ 2025. 12.) 중에는 배출량 보고의무만 부담, 2026. 1. 전체 시행
-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품목(향후 대상 품목 확대 가능)을 EU에 수출하는 기업은 제품생산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 신고의무 부담, 신고의무 불이행시 벌금 부과
- 대상 품목의 탄소배출량이 일정기준 초과하면 CBAM 인증서 구매해야 EU로 수출(통관) 가능

영국 탄소국경조정제도 (UK CBAM)

- 2023. 12. 영국 정부는 2027년부터 CBAM 시행하겠다고 발표
-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유리 등 탄소집약적 제품에 적용 예상, 2024년 구체적인 적용대상 확정 예정

탄소중립산업법 (Net-Zero Industry Act)

- 2023. 3. 집행위 제안, 2024. 2. 이사회-의회 잠정 합의
- 배터리, 태양광 등 8개 탄소중립기술 제조역량을 2030년까지 EU 역내 수요의 40%까지 확대
- 행정절차 간소화, 탄소중립기술 프로젝트 투자에 대한 재정 지원, 공공조달 시 탄소중립 고려, 규제 샌드박스

탄소제거 인증 프레임워크 (EU Carbon Removal Certification Framework)

- 2022. 11. 집행위 제안, 2024. 1. 이사회-의회 잠정 합의
- 탄소제거시장 발전과 기술 개발을 위해, 탄소제거활동 기준을 마련하고 인증 부여
- 인증 받은 탄소제거활동에는 탄소제거 인증마크 부여

EU 배터리법

- 2020. 12. 집행위 제안, 2023. 8. 발효, 2024. 2. 18. 시행 (전기차, 산업용 등 모든 종류의 배터리에 적용)
- 지속가능성 및 안전 요건, 라벨링 및 정보 요건을 충족한 배터리만 EU 내 판매 가능
- 탄소발자국 선언, 라벨링, 기술문서 (전기차, 충전식 산업용 및 LMT 배터리, 2025. 2. 순차 시행)
- 유해물질 사용 규제, 재활용 의무, 공급망 실사, 배터리여권, 폐배터리 수집·처리·재활용 등 폐배터리 관리

차량 배출기준 강화 (EURO 7 Standard)

- 2022. 11. 집행위 제안, 2023. 12. 이사회-의회 잠정 합의, 2024. 2. 의회 통과
- 배출 허용기준 강화, 암모니아, 아산화질소, 메테인 등 규제대상 추가, 비(非)배기 오염물질 포함, 브레이크 및 타이어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규제, 배터리 수명기준 등

EU 삼림벌채규정 (Regulation on Deforestation-free Products)

- 2021. 11. 집행위 제안, 2022. 12. 의회-이사회 잠정합의, 2023. 4. 의회 통과, 2023. 6. 발효
- 커피, 코코아, 소고기, 팜유, 고무, 목재, 대두와 그 관련 제품 규제
- EU 시장 출시를 위해 대상 제품이 삼림 벌채를 통해 생산되지 않았다는 사실 입증 필요
- 기업은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삼림 벌채에 관하여 실사하고 책임 부담, 환경 및 사회적 기준 충족 필요

EU 배출권거래제 (EU Emission Trading System, EU-ETS)

- 2023.6. EU 배출권거래제법(EU-ETS) 개정으로 해상운송 부문을 규제대상에 포함
- 2024.1. EU 회원국의 항구를 이용하는 선박에 대해 온실가스배출량 보고 및 배출권 제출의무 부과
- 선사는 2024년 배출량의 40%에 해당하는 탄소배출권 의무 제출, 2027년까지 100%로 확대 예정
- 한국 선사 등 비EU 선박에 대해서도 EU 회원국 항구 입출항시 의무 부과
- 비EU와 EU 사이 해상운송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50%에 대해 탄소배출권 제출 필요

EU 기업지속가능성공시지침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유럽지속가능성공시기준 (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 CSRD – 2021.4 집행위 제안, 2022.11. 승인, 2023. 1. 발효. (18개월 내 자국 법률 전환 필요)
- ESRS – 2022. 집행위 제안, 2023.7 채택. 2024.1. 시행 (역내 기업 약 5만개 적용), (산업별 표준) 산업 부문별 채택 기한을 2026. 6.로 2년 연기
- 비EU 기업 중 EU 역내 매출 4천만 유로 이상 지점/종속기업이 있거나 EU 역내 매출 1억5천만 유로 이상인 경우 적용 (2029년 공시 적용)
- 대상기업은 CSRD에 기반하여 ESRS을 따르고 82개 주제 표준 중 이중 중대성 평가에 입각하여 해당 내용 공시 필요

에코디자인 규정 (Ecodesign for Sustainable Products Regulation)

- 2022. 3. 집행위 제안, 2023. 12. 이사회-의회 잠정 합의
- 제품의 생애주기 동안 환경과 기후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재활용 촉진, 제품의 지속가능성 증진
- 섬유, 가구, 철강 등 규제대상 추가, 생애주기 정보를 포함한 전자적 여권 도입, 강화된 집행절차 도입

EU 그린워싱 지침 (Greenwashing Directive)

- 2023. 3. 집행위 제안, 2023. 9. 잠정 합의, 2024. 1. 의회 통과, 향후 이사회 최종 승인 및 자국법 전환 필요
- 제품에 ‘환경친화적’ ‘자연적’ ‘기후중립적’, ‘에코’ 등 일반적인 친환경 표시(라벨) 금지, 근거 없는 내구성 및 사용 횟수 등 잘못된 표시 금지
- 일정 요건 충족하여 공식 인증을 받은 경우에만 지속가능성 표시 가능

EU 그린 클레임 지침 (EU Green Claims Directive)

- 2023. 3. 집행위 제안, 2024. 3. 의회 동의, 향후 이사회 승인 및 자국법 전환 필요
- 제품과 서비스 텍스트/라벨에 친환경성 표기 시 그 근거 및 승인 필요, (예) 탄소중립 주장은 내부 감축 혹은 Offsets 여부 명확히 구분, LCA 관점에서 중요한 환경영향 측면에서 개선 방안 설명
- 연간 매출 최대 4%에 해당하는 벌금 부과 및 공공지원 배제 조치 가능성

영국 그린 클레임 코드 (UK Green Claims Code)

- 2021. 9. 영국 경쟁시장국 (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 CMA) 발표
- 친환경 제품 주장(Green Claim)에 대한 6가지 행동원칙을 담은 시행지침
- 소비자 오인 방지를 위해 정확하고 객관적인 근거에 기반한 사실 전달하고, 중요한 정보 공개 필요
- 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거나 모호한 표현, 제품의 수명 주기 중 일부분을 이용한 기만 광고를 금지 등

EU ESG 용어 펀드 명칭 가이드라인

- 2022. 11. 유럽증권시장청(ESMA) 초안 발표, 2023. 8. 1. EU 내 모든 펀드에 적용
- ESG 용어를 펀드 명칭에 사용 시 투자 자산 80% 이상 환경 및 사회적 기준 부합 필요
- 지속가능성 관련 용어 사용 시 투자 자산 50% 이상이 지속가능한 투자 기준 부합 필요

기술

EU 반도체법 (European Chips Act Regulation)

- 2022. 2. 집행위 제안, 2023. 9. 발효 (개별 회원국 시행계획 미완성)
- EU 내 반도체 생태계 조성, 안전한 공급망 확보, 반도체 시장점유율을 2030년까지 20% 확대
- 최신 반도체 기술 개발과 연구·혁신 지원을 위해 공공 및 민간 투자 430억 유로(약 61.5조 원) 이상 조성

EU 인공지능법 (EU Artificial Intelligence Act)

- 2021. 4. 집행위 제안, 2023. 12. 잠정 합의, 2024. 1. 최종안, 2024. 3. 의회 통과
- 위험 기반 접근법(Risk-based Approach): AI 시스템을 금지된 위험, 고위험, 낮은 또는 최소 위험으로 구분
- 금지된 위험: 소셜 스코어링(social scoring) 등 개인이나 집단에 해로운 일정한 행위 금지
- 고위험: 투명성과 정보제공, 인간에 의한 감독, 위험 관리 시스템 구축, 품질 기준 충족, 기술문서 작성 등

공급망

공급망 실사지침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CSDDD/CS3D)

- 2022. 2. 집행위 제안, 2023. 12. 이사회-의회 잠정 합의, 2024. 3. 이사회 승인, 2024. 4. 의회 투표 예정
- 임직원 1000명 이상 및 연간 순매출 4억5천만 유로 이상 기업에 적용되며, 직접적 영향 및 위반 시 민사 책임 적용으로 완화됨
- 대상 기업은 공급망 체인에서 환경 오염 및 인권 침해 발생 여부를 실사하고 이를 방지할 의무 부담
- EU 차원 공급망 실사 뿐만 아니라 독일(Act on Corporate Due Diligence), 프랑스(Corporate Duty of Vigilance Law) 등 개별 국가의 유사 규제 존재
- 국내 기업의 경우, CSDDD 대상 기업의 공급망에 속할 경우 실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인권 및 환경 리스크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함

핵심원자재법 (Critical Raw Materials Act)

- 2023. 2. 집행위 제안, 2023. 11. 잠정 합의, 2023. 12. 의회 채택, 2024. 3. 이사회 승인하여 최종 채택
- 34개 핵심 원자재(17개 전략 원자재 포함) 외부 의존 감소, EU 시장점유율 2030년까지 20% 달성, 공급망 확보
- 전략 원자재 사용하여 배터리 등 각종 물품 제조하는 대기업은 3년마다 공급망에 존재하는 위험성 평가

유럽연합 입법 절차

EU의 규정(Regulation)*과 지침(Directive)** 등 입법을 위해 우선 집행위원회(Commission)의 제안이 필요하고, 제안된 입법안에 대한 의회(Parliament)와 이사회(Council)의 동의, 협의 및 최종 승인 필요, 관보 게재 후 일정 기간 후 발효

* 규정(Regulation) - 회원국의 국내입법 필요 없이 EU 역내에 구속력 발생

** 지침(Directive) - 회원국의 국내입법절차(국내법 전환) 필요

PROFESSIONALS

통상 및 규제



허경욱 고문
T 02.3404.7504
E kyungwook.hur@bkl.co.kr



임성남 고문
T 02.3404.0576
E sungnam.lim@bkl.co.kr



김지이나 변호사
T 02.3404.0698
E jeena.kim@bkl.co.kr



권소담 변호사
T 02.3404.7651
E sodam.kweon@bkl.co.kr



한창완 변호사
T 02.3404.1076
E changwan.han@bkl.co.kr

환경, 기후위기 및 ESG



정연만 고문
T 02.3404.7511
E yeonman.jeong@bkl.co.kr



김진호 외국변호사
미국 Oregon주
T 02.3404.0282
E jinhyo.kim@bkl.co.kr



이연우 전문위원
T 02.3404.7351
E yeonwoo.lee@bkl.co.kr

공정거래와 소비자보호



강일 변호사
T 02.3404.0689
E il.kang@bkl.co.kr



김규식 변호사
T 02.3404.0945
E kyusik.kim@bkl.co.kr



최휘진 변호사
T 02.3404.6406
E hwijin.choi@bkl.co.kr

개인정보보호와 인공지능(AI)



강태욱 변호사
T 02.3404.0485
E taeuk.kang@bkl.co.kr



윤주호 변호사
T 02.3404.6542
E juho.yoon@bkl.co.kr

기업법무, 컴플라이언스 및 아웃바운드



이범주 변호사
T 02.3404.0843
E alan.pj.lee@bkl.co.kr



손지영 외국변호사
미국 New York주
T 02.3404.0241
E jiyoung.sohn@bkl.co.kr



서원민 외국변호사
독일
T 02.3404.0246
E michael.suh@bkl.co.kr